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형)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 · 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상반기 (1차)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26.1월	1월 26일 ~ 2월 12일	3월	4월
	구매연계·상생협력				
상반기 (2차)	TRL점프업(1단계)	'26.3월	3월 ~ 4월	5월	6월
하반기 (3차)	구매연계·상생협력	'26.5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

*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반기 1차의 기술이전사업화는 1단계(PoC · PoM) 지원만 해당하며, '26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대상 '27년 2단계 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3.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 TRL 점프업)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
* 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4.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6년 변경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도		'26년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서 지원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사업에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선설, 구매연계상생협력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년, 6-8억원 이내 <table border="1"> <tr> <th>내내역사업</th><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tr> <tr> <td>기술이전사업화</td><td>최대 2년, 8억원</td></tr> <tr> <td>구매연계·상생협력</td><td>최대 2년, 6억원</td></tr> </table>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년, 1-6억원 이내 <table border="1"> <tr> <th>내역사업</th><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tr> <tr> <td>기술이전사업화</td><td>(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td></tr> <tr> <td>구매연계·상생협력</td><td>최대 2년, 6억원</td></tr> </table>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접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1~2월, 하반기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1~2월, 3월 / 하반기 5~6월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3억 원(138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3억 원(500개 과제)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잠식상태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기타 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연계)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에 대한 가점 신설(1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기업 													
사업신청 관련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비목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 조제4항)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 조제4항)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3. `26년 상반기 지원내용

- (사업목적)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1차 지원규모) 403억원 내외 (295개 과제 내외)

< `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지원규모 >

내역사업	세부과제	26년 예산(억원)	공고별 지원규모(개)		
			1차	2차	3차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200	200	-	-
	2단계 (사업화R&D)	-		27년 지원예정	
TRL점프업	1단계 (PoCPoM)	100	-	100	-
	2단계 점프업R&D)	-		27년 지원예정	
구매연계· 상생협력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123	44	-
		해외수요처	47	15	-
		조달혁신	31	10	-
		혁신형도전	20	-	10
	상생협력	82	25	-	20

* 2차, 3차 공고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

** '26년 기술이전사업화는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붙임2]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은 1단계(PoC-PoM)만 지원- (지원자격)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2단계 협약 시 계약서 제출)	붙임2 참고
구매연계·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 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 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 단,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3책5공 적용을 예외로 함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 위 타 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매뉴얼 >> 온라인 매뉴얼 >> "IRID 통합 매뉴얼" 참고](http://www.iris.go.kr)

○ 공고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2월 12일(목)

○ 신청·접수기간 : 2026년 1월 29일(목) ~ 2월 12일(목),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사업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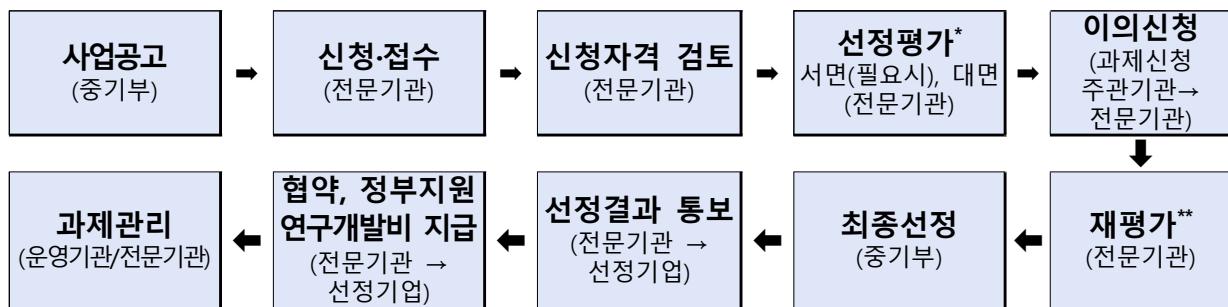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X] 참조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 및 일정은 선정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내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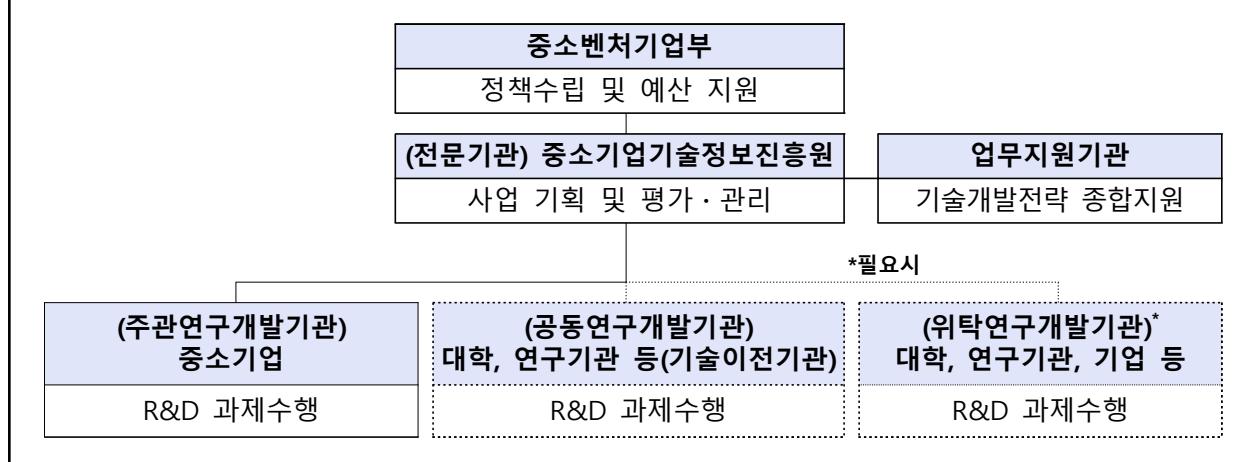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추진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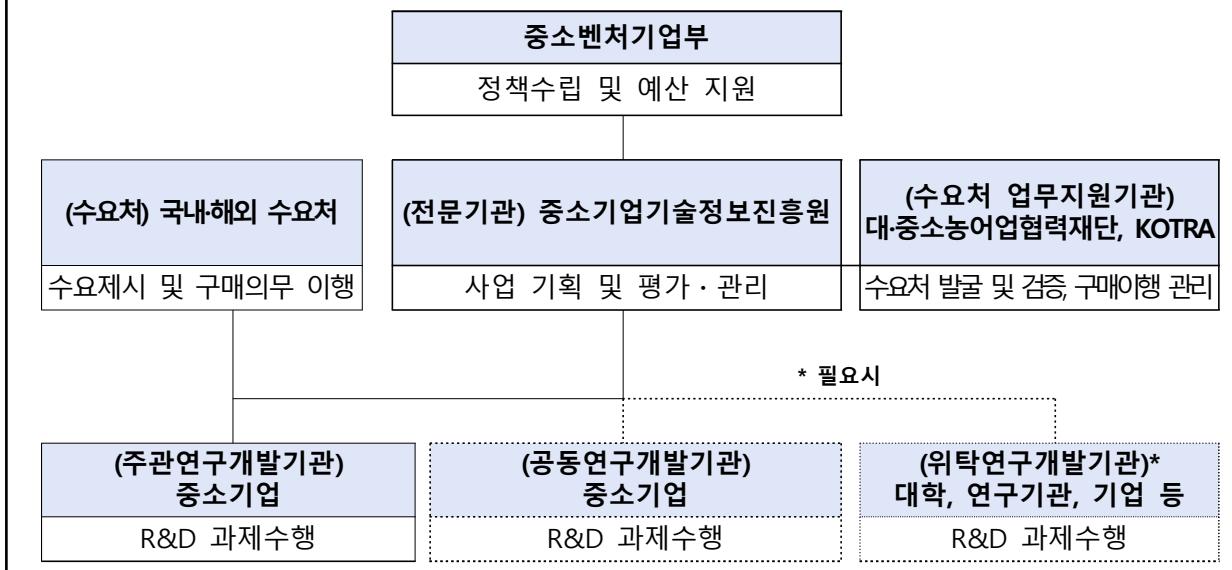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등만 가능(필요 시)

** 업무지원기관 목록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확인

○ 구매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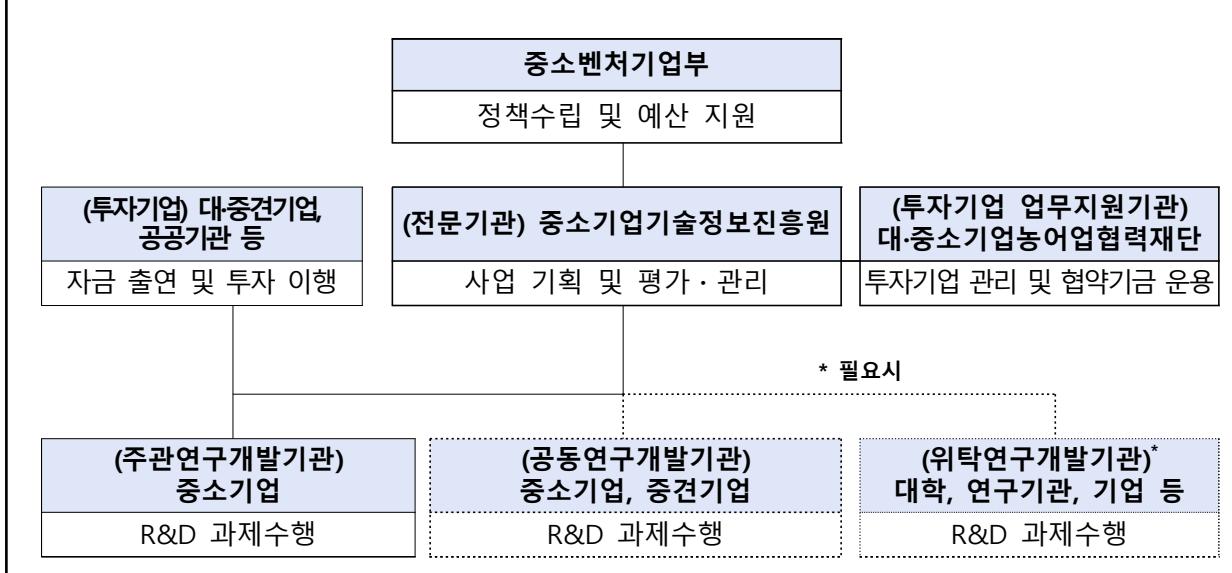
< 구매연계형 사업추진 체계도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상생협력형

< 상생협력형 사업추진 체계도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신청 ·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 · 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1~5]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3]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붙임4] 자주 묻는 질문(FAQ)